

보도시점 2024. 5. 7.(화) 10:00 배포 2024. 5. 7.(화) 08:00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 파충류 등 검역 거치지 않았던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로 생태계 보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21.5.18. 공포, '24.5.19. 시행)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관(야생동물검역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시행령에서 정함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23년 관세청 통관 기준)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붙임 1. 야생생물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2.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강민주 (044-201-7251)



붙임 1

야생생물법 개정 대비 하위법령 개정안 요지

- 야생생물법 개정('21.5.18., '24.5.19.시행)
 - 제2장에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신설(제34조의13~제34조의23) 등
- (시행령)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 신설 등
- (시행규칙) 제44조의13 내지 제44조의26 신설 등

법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
야생동물검역기관, 야생동물검역관,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 (제34조의13 및 제34조의14 신설 등)	야생동물검역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23조의6 신설)	검역대상질병, 야생동물검역관, 야생동물검역사, 지정검역물 범위, 수입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제4조의3, 제44조의13 내지 제44조의15, 제44조의19, 제44조의20,
수입금지, 수입금지물건 처리 (제34조의15 및 제34조의16 신설)	-	수입금지사항의 예외적 수입허가, 수입금지물건 조치 (제44조의16, 제44조의17)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 수입검역장소, 검역시행장의 보관관리인,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 (제34조의20, 제34조의21, 제34조의22 및 제34조의23 신설)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3조의7 신설)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수입장소 지정(인천국제공항),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검역시행장 지정, 지정검역물의 관리, 검역 불합격품 처분 (제44조의18, 제44조의21, 제44조의22, 제44조의23, 제44조의25, 제44조의26)
수입검역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제68조제1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등)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제39조 및 제40조 개정)	행정처분 기준 추가 (제44조의24)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 의무화 >

- 야생동물검역기관 및 야생동물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제34조의13 및 제34조의14 신설 등)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

-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소각·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지정검역물이 수입되는 장소를 제한함(제34조의15 및 제34조의16 신설)

< 수입검역 및 검역시행장 >

- 검역결과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송·소각·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야생동물 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제한하며,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 및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을 지정함(제34조의20 내지 제34조의22 및 제34조의23 신설)

< 수입검역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제68조 제1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등)

< 야생동물검역기관 및 수입장소 지정 >

- 야생동물검역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하고, 지정 검역물의 수입장소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함(시행령 제23조의6, 시행규칙 제44조의21)

* 수입자가 미리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 요청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통보한 경우에 인천국제공항 이외의 장소로도 반입이 가능함

< 야생동물검역관 임명 및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 >

- 야생동물검역관은 21시간 교육 이수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임명하고,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을 정하고 21시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시행규칙 제44조의13, 제44조의14)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수입허가 등 >

- 수입금지물건을 시험·연구조사 및 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 규정(시행규칙 제44조의16, 제44조의17)

< 수입검역 세부절차 등 >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지정검역물의 범위, 수입검역 신청부터 수입검역증명서 발급까지 세부절차를 규정함(시행규칙 제4조의3, 제44조의15, 제44조의18, 제44조의19, 제44조의20, 제44조의22, 제44조의26)

<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

- 검역시행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검역시행장에 선임하는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을 규정함(시행령 제23조의7, 시행규칙 제44조의23 내지 제44조의25)

붙임 4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유입·검역·판매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야생동물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검역* 근거 마련, 야생동물 매개 질병 검역 강화 방안 추진

* (검역) 해외로부터 질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에서 검사하고 소독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모든 조치와 예방적 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 야생동물 검역제도 개요

- (목적) 해외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 방지 및 국내 전파 차단
 -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제도' 근거 마련('21.5.18.)
- (주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
 - ※ 환경부장관 위임사무가 아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고유사무
- (대상) 파충류 등 야생동물(사체 포함) 및 생산물(가죽, 살 등)
 - 파충류와 포유류·조류에 대해서 검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검역 대상질병은 전파력·치사율, 국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정·관리

구 분	검역 내용	소관 부처
포유류·조류	· 가축전염병(ASF, 구제역, AI, 광견병 등 68종)	농식품부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환경부
파충류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환경부
양서류	· 수산동물전염병(잉어봄바이러스병 등 26종)	해수부

- (장소) 화물·휴대품이 집중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선 실시
 - ※ (수입현황) 파충류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23년 관세청 통관 기준)
- (절차) 휴대품, 화물에 따라 별도 절차를 거쳐 검역 추진

